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해명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다 나은 정부</b>
	배포일시	2019. 5. 21.(화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	담당자	과장 황윤언, 사무관 문병철 ☎ (044) 201-3337, 3342
<b>보도일시</b>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청약저축 이자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, 법원도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.

- 정부가 수천억원의 청약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정부는 2006. 2. 24. 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’ (이하 ‘규칙’) 을 개정하여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며,
  - 개정일 이전 가입자에 대하여 개정일 전일까지는 종전 이율을, 개정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.
  - 이는 당시 시중금리 하락세 (정기예금금리 ‘05년말 3.5%) 를 감안하여, 무주택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수지개선을 위해 기존 6% 이율을 4.5% 이율로 인하한 것입니다.
- 그 당시 규칙 개정 입법예고(‘05.12.15)시에는, 개정이전 가입자에 대하여 개정일 이전에는 변경 이전의 이자율을, 개정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였고,
  - 시행시 부칙 규정은 개정이전 가입자에 대해 “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”라고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.
- \* 개정일 이후의 이율은 4.5%를 적용하되, 개정일 이전의 이자는 “종전”의 6%를 적용한다는 의미

- 이는 입법예고 당시 부칙 규정이 다소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한 것이며, 당초 금리인하의 개정 취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.
- 청약저축은 1982년부터 일관되게 변동금리 상품으로 운영되어 왔으며,
- 변동금리방식은 금리가 변동되면 그 때부터는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이자율을 따르는 것으로, 이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들이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.
  - 이에 이자율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간명하게 문안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2011. 12. 12. 청약저축 가입자 1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규칙 개정일 (2006. 2. 24) 이후에도 6%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,
- 재판부에서는 이자율 인하가 정부의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, 은행의 점포내 안내자료 및 통장인쇄 등으로 고지되었고, 은행과 청약저축 가입자간의 계약관계,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
  - 2006. 2. 24. 이후에도 변경된 4.5%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으며, 이는 2013. 9. 26.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.
- 청약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활용하거나 무주택서민의 주택구입·전세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는 등으로 서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,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약저축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가 철저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SBS, 5.21) >

- ◆ “정부·은행의 잘못된 계산.... 청약이자 수천억 덜 줘”
- ‘06.2월 청약저축 금리 인하시 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이후에도 6%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도, 실제 4.5% 이율 적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문병철 사무관(☎ 044-201-33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